

예산총칙

2021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33,957,063	16,018,712
일반회계	469,242,237	14,077,267
특별회계	64,714,826	1,941,445
기타특별회계	64,714,826	1,941,445
상수도특별회계	15,413,066	462,392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786,246	23,587
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	825,261	24,758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575,747	17,272
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	33,759,406	1,012,782
청사건립특별회계	13,355,100	400,653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없다".

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,295,159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4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직무수행경비
3. 법정의무부담금(연금부담금, 국민건강보험금, 연금지급금, 사회복지무요원보상금)
4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
5. 재해대책 및 복구비